

# 대 전 지 방 법 원

## 제 1 민 사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9나2580 과납금 및 계약금 등 반환청구               |
| 원고, 항소인   | A<br>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경아                       |
| 피고, 피항소인  | B<br>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준배                       |
| 제 1 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19. 5. 10. 선고 2019가소8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 5. 27.                             |
| 판 결 선 고   | 2020. 6. 24.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28,6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였고,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국유지인 충남 금산군 C 구거 2,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토지분할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사무를 피고가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2014. 8. 18. 2,000,000원을, 2014. 8. 25. 6,778,820원을 각각 피고에게 지급하였고(원고는 2014. 8. 25. 8,778,82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약정된 용역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을 추가하면서 2015. 3. 13. 추가 용역대금 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경과 2015. 3.경 2차례에 걸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국유재산용도폐지신청서를 금산군청에 제출하였고, 2015. 4. 16. 이 사건 토지 중 76㎡가 충남 금산군 D로, 이 사건 토지 중 115㎡가 충남 금산군 E으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2015. 9. 30. 원고가 위 D 토지를, 원고의 처인 F가 위 E 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2019. 1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경료하였다.

라. 한편, 2015. 4. 16. 이 사건 토지 중 443㎡가 충남 금산군 G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2016. 4.경 위 G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용도폐지신청서를 금산군

청에 제출하였고, 2016. 11. 24. 위 G 토지 중 175㎡가 충남 금산군 H으로 분할되었으며, 원고가 2016. 12. 22. 위 H 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2017. 1.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5, 19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는 용역사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먼저 지급한 후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한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정산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실제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과 용역사무를 위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지출되지 아니한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9158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2 내지 5, 20 내지 2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 약정에 따른 용역대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용역사무에 소요될 비용의 항목별 예상금액 산정내역이 기재된 견적서(갑 제2호증)에 원고와 피고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견적서에는 '본지에 기재된 금액은 예상금액으로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용역사무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예상금액이 다를 경우 피고가 매입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나머지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견적서에 정산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정산시기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위 견적서 중 일부에는 예상비용을 '3,431,365원'으로 산정하였음에도(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2015. 3. 13. 지급한 추가 용역대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3,000,000원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위 견적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후 정산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갑 제20호증)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과 예상금액 사이의 차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의 내용은 원고가 매입하고자 했던 충남 금산군 G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와 F가 2018. 6. 5.경 피고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의 답변 내용을 '법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③ 원고가 '피고가 매입할 수 없는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원

고로부터 용역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 검찰청 검사는 2019. 12. 16.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에 2014. 9.경, 2015. 3. 경, 2016. 4.경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용도폐지신청을 하였고, 충남 금산군 G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매입을 의뢰한 국유지를 실제로 원고가 매입할 수 있게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매입하지 못한 부분은 국토계획이 용원상 하천구역선과 보전관리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매입이 가능한 국유지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은 실제 지출한 비용과 다르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으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예상비용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매입을 의뢰한 국유지 중 위 G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매입을 의뢰한 토지에 대해 실제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박효송

판사

신옥영